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12. 24 선고 2023가단1014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피고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종윤

변론 종결2024. 10. 29.

판결 선고2024. 12. 24.

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과 소외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9. 각 체결된 협의분할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들은 위 C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중 각 9분의 2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19. 7. 26. 접수 제 114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구상금 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22차전 6374호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50,805,527원과 그 중 50,037,808원에 대하여 2012. 7. 31.부터 2012. 9. 5.까지는 연 15%, 2012. 9. 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20%, 2019.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2022. 8. 31.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22. 10. 12. 확정되었다.

나. C은 망 D의 소유이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9.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A 2분의 1 지분, B 2분의 1 지분)들에게 2019. 7. 26.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접수 제1140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위 부동산을 피고들의 소유로 하는 취지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위 계약의 취소 및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C이 이미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는 액수의 특별수익을 받았고, 피고들의 기여분을 고려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2) 먼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을제9호증의 각 기재, 고성군에 대한 과세정보제공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D의 상속재산의 개시일인 2019. 5. 9. 당시 망인의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부동산	F 답	I조합 대출금	금2,500,000원
G 전	금30,000,000원		
H 대	금30,000,000원		
J 임야	금35,000,000원		
합계 34,170,660			
예금	I조합 금300,000원		금10,000,000원
I조합 금182,620원			
자동차	I조합 금6,367,897원		
1999cc 자동차 시세10,000,000원1) 위 자동차는 2015년식 1999cc 소나타이고, 2019. 12. 기준 차량경감률이 20%인 점에 비추어 2019. 5. 9.경 가치는 10,000,000원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피고가 변론 종결일 이후 2024. 11. 26. 제출한 참고자료 참조).			
합계	51,021,177원		
	금107,500,000원		

3) 한편 을제3호증, 제8호증의 기재, K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D는 2008. 8. 11. 자신 소유인 F 답을 담보로 하여 L조합 동해지점에서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중 48,5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발행하여 인출하고, 2008. 8. 12. 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2008. 8. 18. 45,000,000원을 C에게 이체한 사실,

한편 망 D는 이와 별도로 C에게 2008. 10. 24. 40,000,000원, 2009. 2. 2. 3,000,000원, 2010. 2. 1. 6,000,000원, 2010. 9. 7. 32,200,000원을 송금한 사실, 반면 C은 D에게 2009. 12. 21. 500,000원을 송금한 후 간헐적으로 D에게 500,000원씩을 송금한 것 외에는 D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이 없는 사실(오히려 C은 모친인 M으로부터도 금원을 송금받기도 하였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D의 계좌에서 C의 계좌로 송금되었음이 확인되는 총 126,200,000원(2008. 8. 18.자 45,000,000원, 2008. 10. 24.자 40,000,000원, 2009. 2. 2.자 3,000,000원, 2010. 2. 1.자 6,000,000원, 2010. 9. 7.자 32,200,000원)은 D가 C에게 증여하였음이 인정된다.

4) 결국 망 D의 간주 상속재산은 177,221,177원(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 합계 51,021,177원 + C의 특별수익액 126,000,000원)으로, 그 중 C의 법정상속분액은 39,382,261원(간주상속재산 177,221,177원 $\times$ 2/9)이고, 이는 C이 특별수익액에 미치지 못한다.

5) 따라서 C의 구체적 상속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C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C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이금진

별지

1) 위 자동차는 2015년식 1999cc 소나타이고, 2019. 12. 기준 차량경감률이 20%인 점에 비추어 2019. 5. 9.경 가치는 10,000,000원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피고가 변론 종결일 이후 2024. 11. 26. 제출한 참고자료 참조).